

중산자이 1단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705번지 일원
- 공급대상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8개동, 일반분양 1,144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일반공급 2세대]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건본주택 관람이 불가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주변 시세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청약 대상세대는 기존 계약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세대로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 및 별도계약품목의 추가 설치,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 계약취소주택 청약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경산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024.09.05.(목)	2024.09.10.(화)	2024.09.13.(금)	2024.09.25.(수)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자이 1단지 상담 전화(053-581-281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경산시)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세대수의 9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KSJ>)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05.(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55**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1.27.(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318**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4.09.10.(화)	2024.09.13.(금)	2024.09.25.(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건설 대구통합사무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5-4)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주택과 - 5672호(2024.09.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70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8개동 총 1,144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일반공급 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30일 부터 2024년 02월 29일 까지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4930055	01	084.9901A	84A	84.9901	26.2288	111.2189	51.6201	162.8390	39.7713	1	1
	02	084.9901B	84B	84.9901	26.0603	111.0504	51.6201	162.6705	39.7713	1	1
	합 계									2	2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15%)	잔금 (85%)	비고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084.9901A	84A	105	2702	228,482,000	310,518,000	-	539,000,000	80,850,000	458,150,000	일반공급
084.9901B	84B	108	305	225,514,000	306,486,000	-	532,000,000	79,800,000	452,20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선택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계약 직후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는 주택으로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시공 내역 및 금액 (추가·변경·취소 불가)

[단위 : 원]

주택형(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품목명	선택 사항 (추가·변경·취소 불가)	공급금액	비고
84A	105동 2702호	인테리어 옵션	발코니 확장	확장	무상시공	
			스타일 옵션	라이트톤	무상 선택품목	
			드레스룸 선택옵션	대형드레스룸 + 간이화장대	무상 선택품목	
84B	108동 305호	인테리어 옵션	발코니 확장	확장	무상시공	
			스타일 옵션	라이트톤	무상 선택품목	
			드레스룸 선택옵션	대형드레스룸 + 간이화장대	무상 선택품목	

※ 본 아파트는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 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변경·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옵션 공급 금액 납부 일정 (추가·변경·취소 불가)

[단위 : 원]

주택형(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품목명	선택 사항 (추가·변경·취소 불가)	공급금액	계약금(15%)	잔금(85%)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4A	105동 2702호	가전옵션	시스템에어컨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975,000	5,525,000

- ※ 가전옵션 선택품목의 비용은 분양가격 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자이에스앤디(주)와 고객간 직접 계약이 진행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공정상 가전옵션 선택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어 상기 가전옵션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가전옵션 외에 품목의 추가 및 기존계약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설치가 완료된 품목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은 가전옵션 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오니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외에 가전옵션 선택품목 관련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11.27)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075015	우리자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가전옵션 납부계좌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 아파트 분양대금,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8동 305호 홍길동 → 1080305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9.13(금) ~ 2024.09.22(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9.1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당첨자 계약체결 [계약 시 구비서류 제출]
 - 계약체결 일시 : 2024.09.25.(수요일) 11:00~16:00
 - 계약체결 장소 : GS건설 대구통합사무소 (장소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35-4)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일반공급)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청약 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 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 철거명실 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명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취소주택 모집공고일[2024.09.0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계약체결 : 정당계약자의 자격 검증 후 별도 안내 예정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Ⅶ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Ⅷ **유의사항**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 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 변경 ·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등 시공상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잔금 지급 전 하자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당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위치하는 하천 및 하수시설 등에 의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경산서부초등학교에 해당되며,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사업주체부담으로 등하교 시간에 통학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기간은 학생재배치시까지이며 초등학교 재배치 시 무상운행은 중단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별 현황	중산1지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의 학교 건립은 중산자이 입주시기와 무관하여 경산지역 전체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검토 예정이며, 학교설립 여부 및 시기는 미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야외주민운동시설(멀티코트 등) 운영시 이용객과 시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주방싱크대 설치), 경로당(주방싱크대, 반침 설치), 독서실(기본집기류 및 도서1,000권), 골프연습장(7타석), 피트니스실(인바디측정기 1대), 사우나(락카름) 등이 제공되나, 이동식 집기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내 입주 후 입주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lub Xian(주민공동시설)은 중산자이1단지, 중산자이2단지 각 별개로 설치(스카이라운지는 2단지에 설치)되며 단지별 독립적으로 운영 및 이용하게 됩니다.
	Club Xian(입주민회의실,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단지별 일반관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냉방기기(에어컨)이 설치되며 전력회생형이 설치 됩니다.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합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웍 통합 화상통화는 동일 단지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상 1층(데크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 계획은 법정대수 아파트 1,176대, 근린생활시설 7대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주차대수 부족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 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 주차계획을 포함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1개층이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진입 1개층 외 주차장주행 차로의 높이는 2.3m입니다.)	
세대내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인정바닥구조로 설계되며, 성능기준 4급(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에는 무선랜기기 ‘1기’가 설치되나, 인터넷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IX 기타사항

■ 복리시설

복리시설

골프연습장(GDR(스크린) 7타석), 피트니스시설(러닝머신12대, 체성분측정기 등), GX룸, 사우나(남/여),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맘스스테이션, 경비실, 옥외주민운동시설(멀티코트,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3개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당 주택건설사업계획상 경산시 중산동 255-1 외 31필지 38120㎡(도로 공원 포함) 국유자산 및 공유자산을 사용검사신청전까지 소유권 확보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7m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3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규역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변압기(표준소비효율 만족) 설치
(제7조 제3항 제3호)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 공용화장실

5. 수분양자가 납부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및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공급계약 내용 외 우리자산신탁(주)가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에이파크	GS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52길 11-5,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07-81-85459	494-87-00579	104-81-18121

■ 분양문의 : 053-581-2813

■ 홈페이지 : <https://xi.co.kr/KSJ>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